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6. 21.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2년 6월 8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6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가. 제안이유

-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지원대상 수정(안 제2조, 제3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약칭 사용 삭제(안 제3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2021년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서울시·자치구·시교육청 공동 사업으로 지원해 온 입학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제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학교”의 정의에서 기존에 제외됐던 초등학교를 포함 하도록 하고 “입학준비금”의 정의를 교복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물품구입 비용 등으로 변경함.
-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포함하여 입학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그 밖에 개정 조문은 사용이 없는 약칭 규정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올바르게 정비한 것임.

○ 검토 결과

- 본 개정안은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전 자치구가 시·자치구·시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 하는 입학지원금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등포구 교육복지 체계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84 호
----------	---------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나.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확대하여 개정(안 제3조)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3조~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 나. 예산조치: 2022년도 본예산 편성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2. 5. 6. ~ 5. 26./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2호부터 제5호”를 “제2조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복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을 “물품구입 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영등포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중·고등학제)”를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금액)”을 “(지원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자”를 “지원 대상자”로, “지원금액”을 “지원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절차)”를 “(지원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기간에 별지서식”을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학년도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